

의안번호	2211337
의 퇴 인	김희정의원
회 답 일	2025.7.30.
추계번호	25B2357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하고,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2억원, 2030년 466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2,168억원(연평균 43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착공후지하안전조사 (안 제20조제4항 신설)	402	417	433	449	466	2,168	434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된 물량 및 단가 등을 바탕으로 국가가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하개발사업 수요변동, 실제 조사단가 및 국비 보조율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4항 신설 (착공후지하안전조사)	지하개발사업자(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)를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(이하 “착공후지하안전조사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(후단 신설)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의무규정 재량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0조 (착공후지하안전조사)	○	• (추계)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상시조사 실시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재 상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비용지원의 기준, 상한 등이 결정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나,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한 물량 및 단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 -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의 비용부담 비율이 불확정적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 사업비 배분비율을 참고하여 비용의 50%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국토교통부 「건설 및 지하안전관리」 사업의 내역사업 ‘지반탐사지원’(2025년제1회 추경예산 43.6억원, 국비 보조율 50%)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안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□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¹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조사 물량에 건당 조사금액 및 국비보조율을 곱하여 추산
- 최근 5년간 지하안전평가,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지하안전평가·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적

(단위: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지하안전평가	282	511	480	398	315	1,986
소규모 지하안전평가	572	1,040	1,033	647	513	3,805
착공후지하안전조사	30	381	524	540	529	2,004

주: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건수는 해당년도 중복제출 시 1회만 산정하였으며,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실적치는 지하안전평가에 대해 실시한 결과임
 자료: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

- (대상 물량) 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필요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건수의 실적치를 고려하여 다음의 가정하에 대상 물량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최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, 2024년 수치가 추계기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 -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치가 추계기간

1)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(2025.4.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명목임금상승률(%)	3.2	3.9	3.8	3.8	3.8	3.8

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 추정물량

(단위:건)

구분(예상치)	2026	2027	2028	2029	2030	소계
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추정물량	1,044	1,044	1,044	1,044	1,044	5,220
소규모 지하안전평가	513	513	513	513	513	2,565
지하안전평가	531	531	531	531	531	2,655

□ (조사단가)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최근 5년 동안 건당 평균 조사비용은 1억 617만원, 조사면적당 단가는 m²당 2,805원임

[표 4]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조사면적 및 조사비용: 2020~2024년

구분	건당 평균 조사면적(m ² , A)	건당 평균 조사비용(천원, B)	조사면적 대비 단가(천원m ² , B/A)
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	37,847.5	106,165	2.805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최근 5년동안(2020~2024년) 실시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건당 평균 조사면적은 16,691.6m²으로 여기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단가(2,805원/m²)를 곱하면 건당 평균 조사비용은 4,682만원으로 추정됨

[표 5]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건당 조사단가

구분	건당 평균 조사면적 ¹ (m ² , A) (2020~2024년)	조사면적 대비 단가(천원m ² , B)	건당 평균 조사비용(만원, C=A×B)
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	16,691.6	2.805	4,682

주 1. 건당 평균조사면적은 2020~2024년까지 실시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적치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1억 9,600만원, 2030년 466억 4,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,167억 6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지하안전 상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상시조사(A)	24,019	24,928	25,866	26,842	27,873	129,527
물량(a, 건)	513	513	513	513	513	2,565
단가(b, 백만원)	46.8	48.6	50.4	52.3	54.3	—
지하안전평가 상시조사(B)	56,374	58,506	60,709	62,998	65,418	304,004
물량(c, 건)	531	531	531	531	531	2,655
단가(d, 백만원)	106.2	110.2	114.3	118.6	123.2	—
합계(C=A+B)	80,393	83,433	86,575	89,839	93,290	433,531
추가재정소요 (국비=C×0.5)	40,196	41,717	43,288	44,920	46,645	216,766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한 물량 및 단가 등을 바탕으로 국가가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하개발사업 수요변동, 실제 조사단가 및 국비 보조율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실적치를 바탕으로 추정한 물량 및 단가 등을 바탕으로 국가가 상시조사 실시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하개발사업 수요변동, 실제 조사단가 및 국비 보조율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